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방법 법률에 명시〉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61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진욱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4. 16.
3. 회부연월일 : 2025. 4.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고 그 처분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13년 직수입자간 제3자 처분의 허용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논란으로 법안이 폐기되었음에도, 제3자 처분의 절차·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난 '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간 제3자 판매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3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시도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스산업의 법적·제도적 안정성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방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6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예외적 처분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생략)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u>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 <u>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처분절차 등에</u> ----- -----.
<u><신 설></u>	<u>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u>
<u><신 설></u>	<u>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u>
<u><신 설></u>	<u>3.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u>
<u><신 설></u>	<u>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u>
<u><신 설></u>	<u>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0조의6¹⁾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원칙적으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하되,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²⁾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내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6조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예외적으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방법을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판매 또는 가스도매사업자·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으로 제한하고 있음.

1)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입한 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국내 제3자 처분방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 (생략)

②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3.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현행법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 제한의 예외규정을 둔 것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잉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임.

그런데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방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간 판매를 허용하는 경우 국회의 입법권한 침해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2016년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방법에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판매”³⁾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

3) 단,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간 판매 가능 물량을 전년도 자가소비량의 10%로 제한

으나 우회입법, 대기업 특혜, 가스산업 민영화 등 논란으로 시행령 개정이 철회된 바 있으며,

2024년 1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간 LNG 잉여물량 판매 처분 허용 등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자가소비용직수입제도의 입법취지, 그간의 국회 논의과정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 입법사항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예외적 처분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간의 천연가스 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먼저, 현행법 제10조의6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3자 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예외적 “처분 방법”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간 천연가스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내 천연가스 공급체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처분방법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외에도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천연가스 처분을 제한하고, 시행령에서 이들 사업자의 예외적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⁴⁾, 자가소비용직수

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5(합성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였으나 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로 자기가 소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3. 다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4.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③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12(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14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공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입자의 천연가스 처분방법만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법체계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방법만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처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타사업자들과 법체계상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⁵⁾, ② 현행법에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정의를 자기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시행령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법률의 개정 없이는 제3자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민간LNG산업협회는 향후 에너지정책 변화 및 수급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 및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14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③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예를 들어 합성천연가스사업자 및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 교환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법률에 근거하여 합성천연가스사업자 및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교환하게 됨.

한국가스공사는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제3자 처분 여부는
입법사항이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우회입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
자 처분 방법 또한 법률에 함께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64